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1. 10. . (제 회)	

**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고령군수 (건설방재과)
제출 연월일	2011. 9. .

법무담당 심사필

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,
-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: 종전 30%에서 15%로 하향
 -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기금사용 용도 신설
 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 보수·보강
 - 재난 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·보수·보강
 -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 -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 등

3. 개정안 : 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련법령 : 붙임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)

6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100분의 30 이상”을 “100분의 15 이상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영 제74조제1항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0조”를 “영 제74조”로 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·보강 (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)
6. 재난예보·경보시설(자동우량경보시설, 자동음성통보시스템, 재해문자전광판,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,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)의 설치·보수·보강
7.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·보수·보강
8. 재난피해시설(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 - 가. 수해·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
 - 나.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
 - 다.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
9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 - 가. 풍수해저감계획,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,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
 - 나.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
 - 다.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, 항공사진 측량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	<p>8. 재난피해시설(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수해·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.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.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<p>9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풍수해저감계획,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,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.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.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, 항공사진 측량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건설방재과 재난복구담당	
연 락 처	(054) 950 - 6152

관계법령 발췌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67조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[전문개정 2010.6.8]

제68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·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0.6.8]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.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

가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

나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(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) 및 보수·보강

다. 재난피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
라.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

마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

바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
2.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[전문개정 2011.6.27]

제75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,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<개정 2011.6.27>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0.12.7]

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

제55조(자연재해저감시설) 법 제6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관 자연재해저감시설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08.4.3, 2009.12.14, 2009.12.15>

1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·호안·보 및 수문
2. 「하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·하구둑·제방·호안·수제·보·갑문·수문·수로터널·운하 및 관측시설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
4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
5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, 양수장,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, 배수장, 취입보(取入洑), 용수로, 배수로, 유지(溜池), 방조제 및 제방
6.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
7.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
8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터널·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

방설·제설시설, 토사유출·낙석방지시설, 공동구, 지하도 및 육교

9. 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예보·경보시설

10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파제·방사제·파제제 및 호안

11. 「어항법」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방파제·방사제·파제제

12.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